

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등중개정조례(안)

제1조(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의 개정)충청북도공영개발사업단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(단장) 제1항중 '부기감' 을 '부이사관' 으로 한다.

제2조(충청북도농산물원종장조례의 개정)충청북도농산물원종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중 '기정' 을 '서기관' 으로 한다.

제3조(충청북도잠업검사소조례의 개정)충청북도잠업검사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중 '지방농림기좌' 를 '지방농업사무관' 으로 한다.

제4조(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의 개정)충청북도가축위생시험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중 '수의관(4급)' 을 '수의서기관' 으로 하고

제6조 제2항중 '수의관(5급)' 을 '수의사무관' 으로 한다.

제5조(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설치조례의 개정)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중 '지방수산기좌 또는 지방수산연구원' 을 '지방수산사무관' 으로 한다.

제6조(충청북도도유림사업소설치조례의 개정)충청북도도유림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중 '기좌' 를 '사무관' 으로 한다.

제7조(충청북도치산사업소조례의 개정)충청북도치산사업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중 '농림기좌' 를 '임업사무관' 으로, '농림기사' 를 '임업주사' 로 한다.

제8조(충청북도임업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의 개정)충청북도임업 시험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1항중 '기정' 를 '서기관' 으로 한다.

제9조(충청북도농어촌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의 개정)충청북도농어촌 공업유치사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중 '기사' 를 '주사' 로 한다.

제10조(충청북도도로관리사업소설치조례의 개정)충청북도도로관리 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2항 및 제5조 제2항중 '기정' 을 '서기관' 으로, '기좌' 를 '사무관' 으로 한다.

제11조(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의 개정)충청북도도민교육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중 '기정' 을 '서기관'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